27. 에스토니아(Estonia)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24년
○ 현행법 : 1992년(노령연금), 1992년(퇴직연금), 1999년(장애연금), 2000년(장제비), 2001년(개인계좌), 2004년(개인계좌), 2004년(투자), 2014년(근로능력수당)

2. 제도형태

○ 기초제도,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제도, 사회부조 제도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제도 : 에스토니아에 영구 거주하는 모든 사람, 에스토니아에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망명자
○ 의무개인계좌 : 자영업자를 포함,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198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194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83년 1월 1일 이전까지 출생한 사람은 임의가입 가능. 임의가입 가능함

4. 재원조달

○ 가입자
• 기초제도, 사회보험, 사회부조 : 없음
• 의무개인계좌 : 소득의 2% 및 관리비용.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470이며 소득 상한은 없음.

○ 자영자
• 기초제도, 사회부조 : 없음
• 사회보험
- 신고소득의 16%, 보험료계산을 위한 월 최저신고소득은 € 470이며, 상한은 € 1,650
• 의무개인계좌
- 신고소득의 4% 및 관리비용.
- 보험료 산정 위한 월 최저신고소득 및 상한은 사회보험과 동일
(하한액 € 470, 상한액 € 1,650)

○ 사용자

• 기초제도, 사회부조 : 없음
• 사회보험
  - 급여지불총액의 16%,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신고소득은 € 470이며, 소득 상한은 없음
• 의무개인계좌
  - 급여지불총액의 4% 및 관리비용. 보험료 산정 월 최저신고소득 및 상한은 사회보험과 동일

○ 정 부

• 기초제도, 사회부조 : 합산 비용. 지자체가 모든 장제비(장례보조금)를 지급함
• 사회보험 : 특정 범주 가입자의 연금을 지급 ;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
• 의무개인계좌 : 없음 ;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노령연금(사회보험)
  - 최소 15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63.6세(2026년에 65세 도달 때까지 1년마다 3개월씩 단계적 증가)
  - 고용(취업활동)은 계속 됨
  - 최소 20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가진 가입자가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최소 10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정상퇴직연령보다 10년까지 먼저 퇴직 가능 (25년 이상의 근무기간 가입자가 12.6년 이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우 5년 먼저 퇴직 가능)
  - 양육 관련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5년 먼저 퇴직 가능 (아동의 수나 그 아동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 따라 상이)
  - 가입자가 체르노빌 사고 관련자일 경우, 5년 먼저 퇴직 가능
  - 조기연금 : 최소 15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가진 남·여 모두 정상퇴직연령보다 3년까지 먼저 퇴직 가능
  - 정상 퇴직(수급)연령 도달 시 근로 활동을 할 수 없음
  - 연기연금 : 연금은 연기될 수 있음. 연령제한은 없음

• 노령연금 (의무개인계좌)
  - 사회노령연금을 수급중인 근무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인 63세 도달자 (2026년 65세 도달까지 매해 3개월씩 단계적 증가), 개인계좌에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시기가 퇴직일로부터 최소 5년 이전인 자.

- 국민노령연금 (사회부조, 소득조사)
  -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가진 63세 (2026년에 65세 도달까지 1년에 3개월씩 단계적 증가) 사회보험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지 않아야 함.
  - 연금보조금 : 8년 이상 자녀를 양육한 자, 핵실험 및 사고로 인해 최소 40% 이상 근로능력 상실한 것으로 판정된 자, 제2차 세계대전 퇴역군인 또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이었던 자, 또는 특정 전정포로였던 자에게 지급

○ 노동능력수당 (기초제도, 소득 조사)

- 16세에서 정년 사이의 연령이어야 하고, 근로능력불가 판정 받아야함. 그리고 다른 어떠한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부분 근로능력수당 : 16세부터 정년 범위에 속하며 근로능력불가로 판정받고 다른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중이거나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심각한 장애를 지닌 가족을 부양하고 있거나 예술분야일로 지원을 받는 중이거나 특정 보호시설에서 요양 중이거나 군 복역 중인 자
- 소득조사 : 가입자의 월 소득이 일일근로능력수당(€11.82)의 90배를 초과할 시 수당은 철회대상임

  * 일일근로능력수당 : 2018년 4월1일부터 €12.72
-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에서 근로능력 판정
- 퇴직연령 도달 시 근로능력수당 정지

○ 장애연금

- 장애연금(사회보험)
  - 최소 1년~14년의 가입기간(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름)이 있는 연령 25세~62세사이고, 완전장애 (근로능력 100%상실) 또는 부분장애(근로능력 40~99% 상실)인 경우 지급
  - 산재나 직업적 병으로 인한 장애일 경우, 최소가입기간 없음
  - 장애연금은 근로능력수당으로 단계적 폐지 또는 대체됨
  - 2017년 1월 1일 전에 가입자의 장애가 판정 또는 재판정 될 경우, 그 장애연금은 다음 재판정 예정일까지 지급 (5년까지 예정된 6개월마다)
  - 2016년 7월 1일 이후, 새로운 장애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 의학전문가가 근로능력상실 정도를 판정
  - 퇴직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은 정지되고, 사회보험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국민장애연금 (사회부조, 소득조사)
  - 가입자는 최소 40%이상의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어야 하고 사회보험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지 않아야 함
  - 고용은 계속 가능
  - 연금보조금 : 가입자가 8년 이상 자녀를 양육하거나, 핵실험이나 사고로 인해 최소 40%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제2차 세계대전 퇴역군인 또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이었던 사람이거나 명시된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포로였던 자에게 지급
  - 국가장애연금은 단계적 폐지되고 근로능력수당으로 대체됨.
  - 2017년 1월 1일 전에 가입자의 장애가 판정 또는 재판정 될 경우, 그 장애연금은 다음 재판정 예정일까지 지급(5년까지 예정된 6개월마다)
  - 2016년 7월 1일 이후, 새로운 장애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 장애사회급여(기초제도)
  - 추가비용이 필요한 보통 장애, 중증 장애, 완전 장애로 판정 받은 자에게 지급
  - 16세 미만의 장애아동, 16세 미만의 아동(학생은 19세)을 양육 중인 장애를 지닌 부모인 자, 경제활동연령(16세~퇴직연령)의 장애를 지닌 자, 퇴직연령에 도달한 장애를 지닌 자에게 지급

○ 유족연금
• 유족연금 (사회보험)
  - 사망자가 정년 도달 시 15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25세~정년인 자로 1~14년(연령에 따라 다름)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능력이 없는 25세 미만인 경우 지급
  - 산재 또는 직업적 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최소 가입기간 없음
  - 수급가능한 배우자는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사망 시점에 임신 최소 12주인 경우
    · 3세 미만인 사망자의 자녀를 키우며 근로하지 않는 경우
    ·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망자와의 혼인기간 최소 1년 이상인 경우
    · 이혼했으며 이혼 전부터 또는 이혼한 바로 다음 해에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사망자와 혼인기간 25년 이상이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연금수급연령 도달 또는 연금수급연령인 경우
  - 다른 수급 가능한 유족으로는 자녀, 계자녀, 형제, 18세 미만의 손자녀(전일제 학생인 경우에는 24세,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 연금수급연령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계부모, 또는 사망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비근로 후견인

- 재혼 시 12개월 후 미망인 연금 지급 정지

• 유족연금 (의무개인계좌)
- 연금은 사망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
- 지명된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유자녀에게 지급

• 국가유족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고 사회보험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지급됨, 유족은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장제비 (사회부조, 소득 조사)
- 연금이 청구되기 전 달이나 그 달에 최소 한 번이라도 최저생활비 연금을 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노령연금 (사회보험)
- 월 연금은 기본 정액급여, 근로기간, 보험요소로 구성됨
- 기본 정액급여 : €161.90 (2018년 4월 1일부터 €175.439)
- 근로기간 :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연수에 1년 연금수급의 가치를 곱한 금액
- 보험요소 : 1999년 1월부터 얻은 가입자 누적된 연간 연금 계수에 1년 연금가입의 가치를 곱한 금액
- 연간 연금계수 = 가입자의 1년의 납부금액/당해 국민 평균 납부총액
- 1년 연금수급 가치: € 5.767 (2018년 4월 1일부터 €6.161)
- 최저 노령연금월액은 월 국가연금액과 동일함
- 월 국가연금액 : € 175.94 (2018년 4월1일부터 € 6.161)
- 노령연금액 상한액은 없음
- 조기연금 : 정상퇴직(수급)연령 전 조기 수급하는 1개월마다 0.4%씩 연금액 감액
- 연기연금 : 정상퇴직(수급)연령 후 연기되는 1개월마다 0.9%씩 연금액 증액
- 연금조정 : 매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사회보장세 연 증가분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됨

• 노령연금 (의무개인계좌)
- 연금액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발생한 이자의 합계에 따라 결정됨
- 월 연금액이 월 국민연금액의 25%보다 적을 경우, 가입자는 퇴직 시에 종신연금을 내야 하거나 또는 인출해야 함
- 월 국가연금액은 €175.94 (2018년 4월 1일부터 € 189.31)

• 국가노령연금 (사회부조, 소득조사)
- 월 국가연금액 (€ 175.94, 2018년4월 1일부터 € 189.31)지급

- 연금보조금 : 최소 8살 이상의 각 자녀 양육시 1년 연금수급가치와 동일한 금액 지급, 다른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월 국가연금액의 10%를 지급
- 1년 연금수급 가치 : € 5.767 (2018년 4월 1일부터 € 6.161)
- 연금 조정 : 매년 에스토니아 국회에 의해 조정됨

○ 완전장애연금

• 근로능력수당 (기초제도, 소득 조사)
- 지급액 = 일일근로수당의 100% X 한 달의 일수
- 부분 근로능력수당 : 일일근로수당의 57% 한 달의 일수
- 소득 조사 : 일일근로수당의 90배를 초과하는 월 소득이 2유로씩 초과할 때마다 1유로씩 삭감하여 연금 지급 (완전불가 또는 부분 근로능력 수급자에 해당)
- 일일근로수당 : € 11.82 (2018년 4월 1일부터 € 12.72)
- 연금 조정 : 매년 4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및 사회보장세 연 증가분에 따라 조정됨

• 장애연금 (사회보험)
- 월 장애연금액은 가입자의 노령연금액 또는 기본정액급여 (€ 175.94, 2018년 4월1일부터 € 189.31)과 가입기간 30년에 기초한 근로기간요소에 장애정도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
- 정상퇴직(수급)연령 도달 까지 최소 6개월 이상동안 지급되고 소득활동 능력의 손실 판정에 따라 달라짐.
- 최소 월장애연금액은 월 국가연금액임
- 월 국가연금액은 € 175.94 (2018년4월 1일부터 € 189.31)
- 장애연금 상한선 없음
- 장애연금은 단계적 폐지되고 근로능력수당으로 대체됨.
- 가입자의 장애가 2017년 1월 1일 전에 판정 또는 재판정될 경우, 장애연금은 다음 판정까지 지급됨 (5년동안 6개월마다 검사받음). 2016년 7월 1일 이후로 새로운 장애연금 지급 없음
- 연금 조정 : 매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사회보장세 연 증가분에 따라 조정됨

• 국가장애연금 (사회부조, 소득조사)
- 장애정도에 따라 국민연금월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이 지급됨.
- 월 국가연금액은 € 175.94 (2018년 4월 1일부터 € 189.31)
- 연금보조금 : 최소 8살 이상의 각 자녀 양육시 1년 연금수급가치와 동일한 금액 지급, 실험이나 사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및 제2차 세계 대전 퇴역군인 또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이었던

사람은 월 국가연금액의 10% 지급. 특정 2차 세계대전 수감자(포로)였던 사람은 20% 지급

- 연금 조정 : 매년 에스토니아 국회에 의해 조정됨.

• 장애사회수당 (기초제도) : 월 급여액은 여러 요소로 구성됨
  - 장애아동수당 : 사회급여의 270%(보통장애), 315%(중증 또는 완전장애) 지급
  - 근로연령장애수당 : 사회급여의 65%(보통장애)부터 210%(중증장애)까지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장애부모수당: 사회급여의 75% 지급
  - 장애수급자수당 : 사회급여의 50%(보통장애), 105%(중증장애), 210%(완전장애)
  - 추가수당은 장애인의 교육(사회급여의 최소 25%부터 최대100%), 고용지원(최대 3년까지 사회급여의 최대 10배), 재활(사회급여의 최대 200%)이나 근로자 직업교육(1년 동안 최대 사회급여의 24배)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 사회급여는 € 25.57 (2018년)

○ 유족연금
• 유족연금 (사회보험)
  - 유족이 1명인 경우 참조연금의 50%, 유족이 2명인 경우 80%, 유족이 3명 이상인 경우 100%
  - 연금액은 수급 가능한 모든 유족에게 균분 지급됨
  - 완전고아인 경우 양쪽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음
  - 참조연금은 사망자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연금, 또는 정액급여(€ 175.94, 2018년 4월 1일부터는 €189.31)와 30년 가입기간 기준 근로기간 요소의 합계액 중 높은 금액 지급
• 유족수당 (의무개인계좌)
  - 가입자가 퇴직(수급)연령 전 사망한 경우 지명된 유족에게 개인계좌에 적립된 금액으로 지급됨. 가입자가 퇴직(수급)연령 후 사망한 경우 지정된 유족에게 최소 5년간 주기적인 급여 지급
• 국가유족연금 (사회조사, 소득조사)
  - 유족이 1명인 경우 월 연금액은 국민연금액의 50%, 유족이 2명인 경우 80%, 유족이 3명 이상인 경우 100% 지급
  - 에스토니아 독립 전쟁의 퇴역군인의 미망인에게 100%. 모든 수급대상 유족에게 균분 지급.
  - 월 국가연금액은 €175.94 (2018년 4월 1일부터 €189.31)

- 연금 조정 : 국민연금은 매년 에스토니아 국회에 의해 조정됨

• 장제비 (사회부조, 소득조사) : 일시금 € 250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기초제도, 사회보험, 사회부조

•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 http://www.sm.ee
  - 전반적 감독
•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Insurance Board)
  - http://www.sotsiaalkindlustusamet.ee/
  - 전반적인 계획 및 조정
• 에스토니아 실업보험재단(Estonian Unemplyment Insurance Fund)
  - http://www.tootukassa.ee/
  - 근로능력수당 관리 (2016년 7월 1일부터)
• 세무 및 관세 사무소(Tax and Customs Office)
  - http://www.emta.ee/
  - 보험료 징수
•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에서 장제비 지급

○ 의무개인계좌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http://www.fi.ee
  - 재무감독관청 및 에스토니아 중앙사회보장호적관리소의 전반적 감독
• 재무감독관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http://www.fi.ee
  - 연금관리사 및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재무서비스 공급자의 관리감독
• 에스토니아 중앙사회보장 호적관리소 (Registar of the Estonian Central Register of Security)
  - http://www.e-register.ee
  - 각 가입자의 연금계좌 개설

<2018년 ISSA 자료>